# 「직원 복무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25. 10. 13. 개정 판 (시행 2025. 2. 23.) → 2023. 11. 6. 개정 판 (시행 2023. 11. 1.)

바뀜 1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https://suleap.syu.my/r/107/compare?from=1700&to=1474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7:39:25 · 밑줄은 바뀐 부분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**제29조(특별 휴가)**<br>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,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할 본인이 휴가를 원할 경우에는 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퇴직예정일로부터 3월의 기간 이내로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<br>① 경조사 휴가<br>1.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는 공휴일이 포함되므로 경조사 휴가일수 외에 공휴일이 추가되지 아니한다.<br>2. 휴가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공휴일인 경우에는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이 아님.<br>3. 경조사 휴가대상 친족범위<br>가. 직계존속<br>(1) 부모.조부모.증조부모뿐 아니라 외조부모.외증조부모 포함.<br>(2) 양자.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.<br>(3) 계부.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님<br>나.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<br>(1) 백숙부모뿐 아니라 고모(부), 이모(부), 외숙부(모) 모두포함<br>다.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<br>(1) 형제자매 뿐 아니라 형수, 제수, 형부, 제랑, 매형, 매제, 처남댁, 동서 포함.<br>② 출산휴가 및 유산·사산휴가〈개정 2019-02-25〉<br>1. 학교는 여직원에 대하여 90일(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,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)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하며, 산후에 45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)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며, 3개월간 100%의 급료를 지급한다.〈개정 2020-06-08〉<br>2. 〈삭제 2025-10-13〉<br>3. 임신 15주 이내인 여직원이 유산, 사산하였을 경우 10일의 유산·사산휴가를 부여한다.〈개정 2025-10-13〉<br>4. 임신 16주 이상 21주 이하인 여직원이 조산, 유산, 사산하였을 경우 30일의 산전후유산·사산휴가를 부여한다.<br>5. 임신 22주 이상 27주 이하인 여직원이 조산, 유산, 사산하였을 경우는 60일의 산전후유산·사산휴가를 부여한다.<br>6. 임신 28주 이상인 여직원이 조산, 유산, 사산하였을 경우는 90일의 산전후유산·사산휴가를 부여한다.<br>7. 임신 1월은 4주(28일)로 계산한다.<br>8. 난임치료 휴가는 6일을 부여하되, 최초 2일만 유급휴가이다.〈개정 2025-10-13〉<br>9.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.〈개정 2025-10-13〉 | **제29조(특별 휴가)**<br>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,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할 본인이 휴가를 원할 경우에는 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퇴직예정일로부터 3월의 기간 이내로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<br>① 경조사 휴가<br>1.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는 공휴일이 포함되므로 경조사 휴가일수 외에 공휴일이 추가되지 아니한다.<br>2. 휴가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공휴일인 경우에는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이 아님.<br>3. 경조사 휴가대상 친족범위<br>가. 직계존속<br>(1) 부모.조부모.증조부모뿐 아니라 외조부모.외증조부모 포함.<br>(2) 양자.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.<br>(3) 계부.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님<br>나.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<br>(1) 백숙부모뿐 아니라 고모(부), 이모(부), 외숙부(모) 모두포함<br>다.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<br>(1) 형제자매 뿐 아니라 형수, 제수, 형부, 제랑, 매형, 매제, 처남댁, 동서 포함.<br>② 출산휴가 및 유산·사산휴가〈개정 2019-02-25〉<br>1. 학교는 여직원에 대하여 9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)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하며, 산후에 45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)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며, 3개월간 100%의 급료를 지급한다.〈개정 2020-06-08〉<br>2. 임신 11주 이하인 여직원이 유산, 사산하였을 경우 5일의 유산·사산휴가를 부여한다.<br>3. 임신 12주 이상 15주 이하인 여직원이 유산, 사산하였을 경우 10일의 유산·사산휴가를 부여한다.<br>4. 임신 16주 이상 21주 이하인 여직원이 조산, 유산, 사산하였을 경우 30일의 산전후유산·사산휴가를 부여한다.<br>5. 임신 22주 이상 27주 이하인 여직원이 조산, 유산, 사산하였을 경우는 60일의 산전후유산·사산휴가를 부여한다.<br>6. 임신 28주 이상인 여직원이 조산, 유산, 사산하였을 경우는 90일의 산전후유산·사산휴가를 부여한다.<br>7. 임신 1월은 4주(28일)로 계산한다.<br>8. 난임치료 휴가는 3일을 부여하되, 최초 1일만 유급휴가이다.<br>9.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.<br>10.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10.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.〈개정 2019-02-25〉<br>11.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〈개정 2019-02-25〉<br>12.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직원이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.〈개정 2020-06-08〉<br>13.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어야 한다. 〈개정 2025-10-13〉<br>③ 여자직원은 매월 1일의 생리휴가를 본인이 청구한 날에 얻을 수 있다.<br>④ 동 규정 제27조, 제28조, 제29조 이외에 포상이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 ⑤ 가족돌봄휴가〈신설 2019-02-25〉<br>1. 학교는 직원이 가족(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자녀 또는 손자녀)의 질병, 사고, 노령,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<br>2. 가족돌봄휴가는 10일 한도 내에서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.<br>3. 이에 관한 세부적 운영기준과 절차는 별도의 가족돌봄휴직지침에 따른다. | 있다.〈개정 2019-02-25〉<br>11.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〈개정 2019-02-25〉<br>12.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직원이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.〈개정 2020-06-08〉<br>13.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직원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 단,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어야 한다. (2021.10.1. 시행)〈신설 2021-09-13〉<br>③ 여자직원은 매월 1일의 생리휴가를 본인이 청구한 날에 얻을 수 있다.<br>④ 동 규정 제27조, 제28조, 제29조 이외에 포상이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 ⑤ 가족돌봄휴가〈신설 2019-02-25〉<br>1. 학교는 직원이 가족(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자녀 또는 손자녀)의 질병, 사고, 노령,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<br>2. 가족돌봄휴가는 10일 한도 내에서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.<br>3. 이에 관한 세부적 운영기준과 절차는 별도의 가족돌봄휴직지침에 따른다. |